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0. 6 선고 2020가단132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9. 15.

판 결 선 고 2021. 10.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9. 1. 3. 접수 제20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D은 1998. 9. 15.경 혼인하였다가 2019. 2. 18. 이 법원 2019호협60호로 협의이혼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제5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와 D의 이혼일자를 2020. 2.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D은 원고와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15. 11. 10.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카드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그에 따라 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카드대금은 2019. 2. 11. 기준 12,852,852원, 2020. 11. 18. 기준 17,033,149원에 달하였다.

다. D은 2018. 12.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9. 1. 3. 접수 제20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후인 2019. 2. 11.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카드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점이 인정될 뿐이고, 갑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증여 전에 D이 원고에 대하여 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D의 원고에 대한 카드대금채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의 D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이 피고와 D 사이의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은 피고와 D의 협의이혼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와 D 사이의 재산분할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D은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② 피고 소유의 고양시 E건물 F호에 관하여 2008. 12. 16. 채무자 D(개명 전 G), 채권최고액 57,6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2. 13. 말소되었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6,300,000원, 근저당권자 I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D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원

별지

1. 강원 평창군 J 전 7,134㎡
2. 강원 평창군 K 임야 8,122㎡
3. 강원 평창군 L 임야 4,066㎡
4. 강원 평창군 M 임야 6,833㎡. 끝.

